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의 과실인정 범위

당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청주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18가단34582판결)에서 법원은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은 후 하악 감각이상의 후유증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 이를 기각 하였다.

원고는 ○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서 2016. 11. 24. 의사로부터 좌측 하악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았고, 2017. 10. 18. 우측 하악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다음 날부터 우측 하악 전치, 하순, 하순하방의 감각이상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018. 5. 1.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감각이상이 계속되어 그 후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 피고병원으로부터 수술의 과정 및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수술동의서도 받지 않았으며, 수술에 선행되는 X선 촬영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및 진료 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회복이 어려운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일실수입 손해와 치료비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병원이 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① 피고는 2016. 11. 8. 피고병원에 내원한 원고에게 파노라마 검사 및 CT촬영을 받게 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의 치아상태, 주변 신경의 위치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좌측 하악의 사랑니를 우선 발치한 뒤 우측 사랑니를 발치하였고, ② 위 검사 시행 후 이 사건 수술까지 일정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당시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안면부의 성장이 모두 끝난 시기이고, 좌측 사랑니 발치 후 우측 사랑니 발치까지의 기간 동안 새로운 병소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으며, 추가적인 검사 시 발생하는 금전적 부담을 고려하면 좌측 사랑니 발치 후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추가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 할 수는 없고, ③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는 사랑니 발치 전 신경손상을 포함한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하여 밀줄, 동그라미, 별표 등을 표시하며 강조하여 설명한 후 원고에게 서면 동의를 받았고, 또한 2017. 10. 18. 우측 사랑니 발치 시 추가적으로 치아가 신경과 근접되어 있어 발치가 어렵다는 점 등을 재차 설



명한 바 있으며, ④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감각이상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발치 전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한 바와 같이 하악 사랑니 발치 후 신경손상이나 신경 자극으로 인한 감각이상 증상은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하며, 특히 원고의 경우는 치아가 신경과 근접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신경 자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을 통하여 의료행위 이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는 기존의 판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서면 동의가 이루어지는 시술 내지 수술의 경우 아무리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 할지라도 진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합병증이 있다면 서면 동의서의 구득, 동의서에 추가적인 설명 기재 등과 같은 행위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관련된 설명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지현 변호사

TEL. 02 565 9801

E-mail. jhson@lkpartner.co.kr